

「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 
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을 반영하여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 및 처리구역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7조)
- 다. 오·폐수의 유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6조)
- 라. 설치 부담금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~제19조)
- 마. 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~제29조)
- 바.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0조~제39조)
- 사. 사업자 대표회에 관한 사항(안 제40조~제42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물환경보전법」

나.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업무과, 하수과와 합의되었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부과·징수,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준공 및 구미시 이관에 대비하여 시설의 운영·관리, 오·폐수 유입, 설치 부담금과 사용료의 부과·징수 및 체납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다만, 시설의 초기 가동률과 입주기업의 오·폐수 유입량이 낮을 경우 사용료 수입만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, 비용추계상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약 53억 8천만 원의 시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.

- 특히, 안 제25조는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1m<sup>3</sup>당 1,500원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유지관리비 부족분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기업지원 및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수익자·원인자 부담원칙, 입주기업과 일반 시민 간 부담의 형평성 및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규모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